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68
----------	-------

발의연월일 : 2015. 12. 8.

발 의 자 : 강기윤·김기선·김성찬
김태원·박덕흠·박성호
서상기·안홍준·윤영석
이노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실제 노무 전개 과정에서 종속적인 노무관계에 있으면서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 의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인 근로3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u>勤勞者</u>”라 함은 <u>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u>를 말한다.</p> <p>2. “<u>使用者</u>”라 함은 <u>事業主, 사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u>를 말한다. <후단 신</p>	<p>第2條(定義) ----- -----.</p> <p>1. <u>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40px;">가. <u>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u></p> <p style="padding-left: 40px;">나. <u>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u></p> <p>2. ----- ----- ----- -----.</p> <p style="text-align: right;">이 경우</p>

<p><u>설></u></p> <p>3. ~ 6. (생략)</p>	<p><u>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u></p> <p>3. ~ 6. (현행과 같음)</p>
---	---